신진주역세권 데시앙 |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DESIAN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추첨제	O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O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O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O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(90일 초과)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
		O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		O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)				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인 인적사항기재)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※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가점제	O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O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O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O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(90일 초과)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
		O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		O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	O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"상세"로 발급
		O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-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,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	-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단,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		O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-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부양) -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 사항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-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-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 사항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)				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인 인적사항기재)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※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

신진주역세권 데시앙 |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DESIAN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기관추천 특별공급	O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O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O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O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(90일 초과)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
		O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		O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)				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인 인적사항기재)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※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

신진주역세권 데시앙 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DESIAN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다자녀 특별공급	O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O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O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O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(90일 초과)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
		O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		O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	O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	O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- 여성가족부의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	O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-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과거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)
		O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	O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	O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	O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-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단,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)				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인 인적사항기재)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※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신혼부부 특별공급	O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O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O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O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(90일 초과)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
		O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		O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O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, "상세"로 발급
	O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
	O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) 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※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
		O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비사업자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		O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	O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	O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	O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-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단,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)				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인 인적사항기재)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※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

신진주역세권 데시앙 |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서류

DESIAN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, 직인날인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	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강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제출	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법인등기부등본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① 등기소 ② 세무서
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이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2020.01.01.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견본주택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3에 해당하는 자[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] 전원의 소득
※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신진주역세권 데시앙 |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DESIAN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O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O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O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O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(90일 초과)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
		O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		O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	O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"상세"로 발급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	-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단,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-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 사항(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-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 사항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)				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인 인적사항기재)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※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

신진주역세권 데시앙 |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DESIAN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생애최초 특별공급	O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O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O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O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"상세"로 발급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※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(90일 초과)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
		O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		O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O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, "상세"로 발급
	O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(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참조)
		O	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O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
	O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) 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※ 청약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※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
		O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비사업자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		O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, "상세"로 발급
		O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-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1.10.15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로 설정하여 발급 ※ 단,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)				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인 인적사항기재)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※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

신진주역세권 데시앙 |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서류

DESIAN

■ 서류접수 장소 :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(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7-20)

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, 직인날인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	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강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제출	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법인등기부등본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① 등기소 ② 세무서
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이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2020.01.01.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견본주택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3에 해당하는 자[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] 전원의 소득
※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

-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
구분	제출 서류	발급처
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	①, ② 세무서

※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· 세액공제 ·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합니다.